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23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이인선·강선영·강대식

임이자 · 김장겸 · 김정재

고동진 · 최은석 · 박상웅

조은희 · 서범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보도하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등 왜곡하여 보도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. 그 결과,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 보도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은 상황임.

이에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이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자가 언론에 의해 2차 피해를 입 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) ① 여성가 족부장관은 여성폭력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 기 위하여 방송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의 여성폭력사 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한다.

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언론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사건보 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여성폭력사건보도 권
	고기준의 수립 및 준수요청)
	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폭력
	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
	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
	·신문·잡지 및 인터넷신문
	등 언론의 여성폭력사건보도에
	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
	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
	<u>한다.</u>
	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언론에
	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
	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
	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
	<u>있다.</u>
	③ 언론은 제2항에 따른 협조
	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
	하여야 한다.